서울특별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이순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241

발의년월일 : 2016년 5월 31일 발 의 자 : 이순자 의워(1명)

찬 성 자: 강성언·김광수(도봉)·김구현

김생환·김선갑·김희걸·문영민 문종철·문형주·박준희·서윤기 성백진·성중기·오봉수·우미경 유 용·유동균·이신혜·이정훈 이현찬·장인홍·전철수·조규영 최영수·한명희 의원(25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지방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바, 특히 자치법규의 질적·양적 증진은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자치법규 확대의 이면에는 실질적 규범력이 미흡하거나,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일관성, 상충방지) 확보의 미흡, 조례제정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실효성이 부족한 자치법규의 양산 은 자치법규에 대한 불신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음.

자치법규에 대한 정기적인 입법영향 분석이 가능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에 대한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신뢰성, 법적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시정 운영의 구체적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조례의 입법목적을 실현하고 자치입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서울특별시장은 2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근거규 정을 마련함.(안 제4조)
- 나. 입법 평가의 대상과 평가 분석기준 및 평가의 시기를 정함.(안 제5조 부터 안 제7조까지)
- 다. 입법평가위원회 설치와 구성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라. 입법평가위원회의 종합결과보고서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로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3.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입법평가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조례 중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입법평가분석지표) 입법평가는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를 별표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입법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 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법무 담당과 장이 된다.
-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평가 분석지표>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사유
1.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의 위임을 근거로 한 조 례인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이 있는가(자 치사무인지 여부 검토)?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해당사항 없음 	
	조례의 제·개정 목적이 현시점에도 적절한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해당사항 없음 	
	조례가 해결하고자 한 문제가 현 시점에서도 존재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유효성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 의 충동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가?		
	조례의 내용이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알기 쉬운 자치법규인 지 평가)		
3. 조례의 효율성	조례 시행에 과도한 비용이 수반되어 예산확보 및 시행에 문제가 있는가?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 잘 추진되고 있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 그렇지않다 해당사항 없음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사유
4. 조례의 공평성	조례 시행으로 남녀/장애인 등을 차 별하는 결과가 발생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와 관련한 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된 사실이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5. 조례와 서울시민과 의 관계	조례 혹은 조례의 집행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인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여 서 울시민들이 조례에 대해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하였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민들은 조례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민원사항이 제기된 적이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아케 작용하기 동시에 나는 시설이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에 대한 개정 또는 폐지의 요 구는 없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6. 조례의 유지 필요성	조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사유
7. 조례의 적법성	상위법령의 위임근거(인용)가 명확 한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조례에 서 규제를 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주민·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과도 하게 규제하고 있지는 않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 제·개정 이후 관련 법령이 제· 개정 되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8. 현실 부합성	서울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대통령 령이나 부령에 있는 규정을 그대 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⑥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가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 법정위원회인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9.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위원회가 연간 평균 4회 이상 개 최되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해당 위원회의 통폐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는가?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전혀 그렇지않다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9조(위원회)에 입법평가 심의 위원회 설치에 따라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10조(구성·운영)에 입법평가 심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 나. 추계결과 ≒ 40.475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40.475천원으로 연평균 8.095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 입법평가 심의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
 - 입법평가 심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가정
-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40.475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 계
세	_	_	_	_	_	_	-
입	소계(a)	_	-	-	_	-	-
세출	입법평가 심의 위원회 설치·구성·운영비	8,125	8,050	8,125	8,050	8,125	40,475
	소계(b)	8,125	8,050	8,125	8,050	8,125	40,475
총비용(b-a)		8,125	8,050	8,125	8,050	8,125	40,475

- 총비용 = 40,475천원
 - 총비용 = 연간비용 × 5년
- 연간비용(입법평가 심의 위원회 설치·구성·운영비) = 8.095천원

- 위원 수당 : 250천원 x 15명 x 1회 = 3,750천원

· 개최횟수 : 년1회 · 위원수 : 15명

· 참석수당 : 150천원(2시간 이상 시)

· 검토수당 : 100천원

위촉장 제작비용 : 5천원 x 15명 = 75천원
속기료 : 300천원(2시간) x 1회 = 300천원

- 결과보고서 제작 : 4,000천원

- 자료 : 서울시 법무담당관

○ 40.475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위원회수당	3,750	3,750	3,750	3,750	3,750	18,750
위촉장 제작비용	75		75		75	225
속기료	300	300	300	300	300	1,500
결과보고서제작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합 계	8,125	8,050	8,125	8,050	8,125	40,475

주 : 물가상승률 미반영 자료 : 서울시 법무담당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 승 우

정책조사팀장 여 차 민 분 석 관 이 정 수

©02-3705-1280, e-mail(intezer@seoul.go.kr)